

第 5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5. 9. 26 ~ 9. 3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

本會會議紀錄

(一九九一年一月)

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

목 차

1995 • 10 • 통권 제43호

I. 개회식	3
II.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
III.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5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39
2.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41
3.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3
4.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5
5.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7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5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9
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3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97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1

11.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5
12.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11
13.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119
14.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3

V. 별 책 부 록

1.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9월 26일(화요일) 11시 02분

開會式順 (제54회 임시회 개회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2. 개회사
3. 교육감 인사
4. 폐식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1시 02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 회 사

● 의장 박재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계 인사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2대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어 첫번째 의안 심의에 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54회-개회식]

계절도 가을인지라 하늘은 높고 푸르며 들녘의 옥곡은 알차게 영글어 가는 이즈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의를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더 한층 반갑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들 교육위원은 오늘 첫 출발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아로새겨 제2대 충청북도교육위원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첫 계단을 오르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과 공인으로서의 소명감을 다시금 공고히 하자는 결속의 다짐을 뜻깊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보다 성숙한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심도있는 의안 심의와 원만한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으며, 주민의 교육 대표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관과 진취적인 사고로 교육의 장래를 위한 조언과 정책대안을 아끼지 않는 교육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모두는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알의 밀알을 정성들여 심는 심정으로 교육을 가꾸고 일구어야 할 것이며, 150만 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은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혜자인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높이 존중하여 열과 성으로 교육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채찍질하며 때로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맞춰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2대 교육위원 모두의 의견은 하나의 공통분모로 집약되어 충북교육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우렁찬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이번 제54회 임시회에는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38억 7천만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있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바, 우리는 5일간의 회기를 통하여 주도면밀한 심의와 심층적 분석으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동안 우리는 중요한 교육의안을 할 때마다 일선학교의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하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 주민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장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우리는 초대 교육위원들이 이루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교육위원회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을 초대 교육위원들의 뒤를 이어 계속 추진하고, 잘못된 제도와 행정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모두 한 식솔이요, 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창출하며, 장래 이 나라의 동량을 육성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간 다져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고장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는 교육위원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다음은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고 육 감 인 사

● 교육감 정인영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54회 임시회에서 '95년도 본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가·사회의 체제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세계화나, 다양화를 추구하는 지방화시대에서는 자원의 개발이나 자본의 축적보다도 국민의 지적재산이 개인과 국가·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과 도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민족생존과 번영의 길을 교육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며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적 변화에 대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중심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서 교육입국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본도에서도 교육의 목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 도덕적인 건전한 한국인의 육성」에 두고, 첫째,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교육발전과, 둘째, 선진 민주시민으

[제54회-개회식]

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의 실현. 셋째, 세계화의 대처할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의 강화, 그리고 넷째,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여건 조성을 중점 시책으로 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학교 교육이 상부의 지침에 익숙해 있던 나머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실천 능력이 미흡했고, 특히 교육자치제도하에서의 학교교육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교육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할 때, 학교장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민주적인 경영철학, 그리고 자율적인 실천능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가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자치 역량을 발휘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학생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발전을 경쟁적으로 이룩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양성을 위한 인성 도덕교육과 교육현장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학습 분위기 쇄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과 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수월성 교육에 힘써 바람직하고 유능한 인간을 육성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교육현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선진화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변화와 개방

이라는 새로운 국가경쟁 질서 속에서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교육현장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가나, 교육경영자, 교직원 모두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금번 제54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는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전입금과 수수료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총, 38억 6,600만원이 증액된 5,394억 6,3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관리비 36억 5천만원과 교육사업비 10억 7천만원, 특별교부된 강당 신축비와 청주고등학교 과학관 신축비, 매괴여상 기숙사 신축비, 그리고 국고보조된 직업교육확충비 등 시설비 14억 6천만원을 추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투자의 완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니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본도 교육시책과 추경예산
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교육감과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
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되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
록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를 거
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15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9월 26일(화요일) 11시 16분

議事日程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5.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위원 선출의 건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95. 주요업무 보고의 건
4.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54회-제1차]

6.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위원 선출의 건
10.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2.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3. 회의록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6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9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다음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5-8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9월 22일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

결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하실 안건입니다.

'95년 9월 19일 조일환 교육위원 외 3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95년 9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하고 9월 28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 두분을 추천하게 되었으며,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조례심사소위원회, '95년도 행정감사 사무계획 작성을 위한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오전에는 북한정세설명

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
기 결정의 건**

(11시 20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위원 발의안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시면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26분)

● **의장 박재현**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김근학**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본도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과 충북 교육의 기본 방향,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연혁과, 3쪽에 일반현황 중, 첫번째 보수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같음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본청은 3국 3담당관 10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원등 7개 기관이 있고, 각시·군별로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만 6천 575명의 교육가족이 충북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865개교에 재학하는 29만 4천여명의 학생을 1만 3천여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법인은 24개이고, 사회교육기관은 모두 2,543개 수가 되겠습니다.

[제54회-제1차]

장을 넘겨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현황은 총규모 5,355억원으로서 의존 수입이 85%를 상회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점 시책으로는 교육발전, 전인교육, 수월성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육여건 조성등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충북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학교운영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으로 교육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의 의식개혁으로 신뢰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교장, 교감 연찬회와 교육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투철한 교육관과 발전적 사고를 함양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며, 사도확립으로 교원연맹 풍토가 조성되도록 훈련하며, 사도의 실천과 성실한 교원이 우대받도록 하겠으며,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연찬회를 개최하고 예산등 6개 분야에 대한 전문화, 대상업무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 인화중심의 민주행정과 현장 우선의 지원 행정이 실현되도록 자율행정을 통하여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의사결정을 민주화하여 민주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교단 중심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지원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개발 문화행사, 주민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학교육성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학부모, 지역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도덕성 함양을 위해 절제교육을 통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작은일부터 생활화하도록 하루 한덕목씩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을 위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각종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광복 반세기 경축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가 동참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문화의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비정신과 중원정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충청문화 순회답사와 조국순례대행진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자료를 발간·보급하는 등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즐거운 교실, 열린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토의·탐구·노작학습의 심화와 주관식평가의 확대를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유아및 특수교육이 내실화 되도록 이들의 교육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의 삶에 대비한 교육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고취와 통일역량을 배양하며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대비 교육자료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번째, 국제화·세계화에 대처할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바로 알고 미래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견 지도하고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로 연계 지도하고 있으며 기초과학교육의 충실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실험실습비를 전년도 대비

10%를 증액지원하고 교육용 컴퓨터도 100% 보급하겠으며, 특히 과학관별로 중점 연구영역을 지원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또한 아울러 외국어 조기교육 실시와 함께 회화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경쟁력 강화 교육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으로 능력있는 기술인이 양성되도록 학과를 개편하고 첨단 학과를 신증설하며, 공동실습소를 운영하여 첨단기계 조작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진로지도를 초·중·고별로 체계화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기회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과 사기양양을 통하여 학생 지도력이 향상되도록 6천여명의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외국현지 연수를 통하여 어학및 선진교육 체제를 배우도록 하겠으며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자료와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인 CAI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학습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에 편리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노후 교실을 중수하고 실험실을 확충하며, 특히 교육시설 사업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교단에 직접 투자되고 교

[제54회-제1차]

육비를 최우선 지원하고 학교운영비도 전년보다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 금년에 8억원을 투입하여 교육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97년까지 모든 기관에 설치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유치원 독립원사를 건립하고 종일반 운영도 점차 확대하겠으며 또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수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점차로 확대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으며 양호교사 배치도 늘리는 한편 현대화된 복지시설 확충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도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 별첨2
(끝에 실음)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서류 배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계속)

● 의장 박재현

다 오셨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새로 출범한 제2대 교육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95

년 9월에 추석 효도휴가비를 당초 5만원에서 봉급액의 50%로 증액 지급토록 지침이 개정 시달되면서 소요재원은 자체 충당하도록 지시되어 우선 기정예산에서 지급함으로써 11월의 인건비가 부족됨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55억 9,721만 7천원인 0.7%인 38억 6,656만 1천원이 증가된 5,394억 6,3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 수입은 매과여상 기숙사 신축외 3건 특별교부금 29억 7,100만원과 학교체육활동지원외 5건 국가보조금 8억 4,056만 1천원을 증액한 총 4,813억 9,5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본청외 2개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3,250만원을 증액한 5억 3,93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충청북도소재고등학교입학전형료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수험료 추가징수 예정액 2,250만원을 증액한 574억 4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구조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비 36억 5,579만 6천원, 교육행정비 1,502만원, 교육사업비 10억 7,792만 6천원, 시설비 14억 6,624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비 4,921만원, 사학지원비 6억 5,106만 2천

원, 예비비 16억 4,81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8억 6,65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사업은 교부 목적대로 37억 8,18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었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조정액 2,972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둘째, 전입금 3,250만원은 전액 도서관 장서 확충비로 계상하였고, 셋째, 공립학교 효도휴가비 추가소요액 62억 6,288만 3천원 중 인건비 자체충당액 26억 708만 7천원을 제외한 부족액 36억 5,579만 6천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96년도 신설예정교 시설비 4개교의 집행잔액 19억 5천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잔액 11억 806만 2천원, 예비비 5억 9,773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넷째, 자체사업으로는 추가 세입 및 예비비를 재원으로하여 국고대여장학금부족액 6억 6,238만 5천원, 공무상재해보상금 추가소요액 1억 4,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부족되는 중평중학교강당신축비 2억 7,600만원, 고교입시관리비 및 행정비부족액 2,425만 1천원등 총 11억 26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에

[제54회-제1차]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3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1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별책2

(끝에 실음)

이어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은 5,198억 3,900만원이고, 세출은 4,788억 400만원으로서 410억 3,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25억 7,8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5,7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5,198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5,198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8%인 935억 7,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2%인 4,26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91억 4,900만원으로서 99.2%인 4,78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5억 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77억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93년도 불용액이 9.7%에서 '94년도에는 3.4%로 대폭 개선하여 교육현장에 재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용액의 최소화로 건전한 예산운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2,709억 2,800만원, 물건비 598억 2,100백만원, 경상이전 540억 5,500만원, 자본지출경비 940억원으로 총 4,788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이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5억 7,800만원중 청주농고 학생수영장 시설사업비등 83억 5,7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은 142억 2,100만원이 '95년

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채권액은 49만 1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94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급학교 운영비로 216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95년도에 개교한 충북공고의 4개교에 대한 건축비에 156억 6,300만원, 2부제수업 해소 및 부족교실증축에 78억 7,500만원, 기존시설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29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유아교육및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 시범유치원사 신축에 11억 1,100만원과 혜화학교 이전신축비로 17억 7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256억 1,500만원의 운영비와 교육사업지원비 23억 2천만원, 시설지원비 21억 9,300만원등 30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및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3개 지역교육청의 학교과학관 건립에 8억 2천만원을, 직업교육확충 및 공업계고등학교 내부시설 현대화를 위한 첨단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38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실고 실험실습비를 17교에 6억 3,900만원, 실고생

장학금을 2,016명에 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학교의 급식 확대를 위하여 신규급식학교시설비 35억 8,600만원과, 급식학교운영비 23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6,640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를 실시 17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명예퇴직제도의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총 63명에 25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4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55분)

● 의장 박재현

[제54회-제1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시행령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심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를 승인하는 등 현행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 승인하는 등, 동일내용의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규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감)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 57분)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의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계조항을 교육위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장애인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교육위원 장애인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총무처 훈령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된 폐질등급을 적용하였고, 상해의 기준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지급대상별 청구자 및 청구기한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보상금 청구자는 교육위원회 의장을 경유해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였습니다.

다.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상금의 지급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일시불로 계좌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 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교육위원 1인을 포함해서 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심의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이

[제54회-제1차]

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발췌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별첨6
(끝에 실음)

(행정관리담당관 자리로 돌아감)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안

(12시 58분)

● **의장 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일환위원 외 3인의 교육위원이 발의하신 의안으로서 대표위원이신 조일환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교육위원 조일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1년 10월 1일 개정되어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의회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며,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5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면서 교육위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일일 6만원을 지급하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회의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부칙 제1조와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을 부칙 제1조에 의해 '95년 9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95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별첨7 (끝에 실음)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앞에서 제안설명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위원 선출의 건

(12시 07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공

직자윤리위원회 추천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기수위원과 안병일위원, 두분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기수위원과 안병일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08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광수, 이기수, 신용철, 안병일, 이경운 위원님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10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근수, 조일환, 정만재, 박동기 위원님, 네분을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11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된 바 대로 의장을 제외한 위원 열분을 위원으로 하여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소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2시 13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안병일,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광수, 안병일,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위원들과 조례심사 위원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각각 활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영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운.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 별첨2
- ▶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3
-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4
-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별첨6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7

※ 별 책

- ▶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1
- ▶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별책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9월 30일(토요일) 11시 07분

議事日程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9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9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7.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8. 기타안건 처리

[제54회-제2차]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9월 26일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소위원회로부터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소위원회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의 승인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안건 별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위원회 박동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조례안 별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기위원 발언대로 나눔)

●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동기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동기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4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은 '95년 9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9월 19일 조일환 교육위원 외 세분이 발의한 것으로 3건 조례안 모두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6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조례안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 자료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보완하는 것이라는데 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5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의 취지를 잘 반영하였다는 데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이 근거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되

[제54회-제2차]

었다는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
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10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
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
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는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리고 조
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
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
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
원회위원장께서,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냥 일괄해서 다하시죠, 한건 한건 그냥
띄지말고요, 지금 조례심사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세건을 다 합해서 같이 하시죠?

● 의장 박재현

모두가 그렇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
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
기 바라며,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
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며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신용철 간사께서는 나
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신용철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 소위원회 간사 신용철**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입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신용철 교육위원
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3차 회의에 걸
쳐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
산안은 지난 9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되어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
라 26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
부된 날과 그 다음날인 27일 양일에 걸쳐
심사·의결하고 29일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 주요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 재원의 적정성과 예산의 목적 적합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여
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액 5,355억 9,721만 7천원보다 38억 6,656만
1천원이 증액된 5,394억 6,37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
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38억 1,156만 1천
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250
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
입 2,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청이 57억 1,068만 7천원,
지역교육청 감액 1억 9,597만 6천원, 예비비
감액 16억 4,815만원으로 편성된 바,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54회-제2차]

다음은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수국민학교, 무극국민학교, 증평중학교, 단양중학교 강당 신축비 20억원, 청주고등학교 과학관 신축비 4억 8천만원, 매괴여상 기숙사 신축비 4억 5,700만원 등 2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후보선수 육성학교와 특별종목 육성학교 지원비 9,400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평가 경비 1억 4,192만 3천원, 공고 투 플러스 원체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비등 직업교육 확충비 6억 1,103만 1천원, 과학고 기자재 확충비 및 독학학위 취득경비 조정으로 인한 감액 911만 3천원 등 8억 4,0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 사업으로 중앙도서관에 2천만원, 청원도서관에 125만원, 보은도서관에 1,125만원 등 장소확충비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수입으로 고교입시관리비 2,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기정예산의 과목조정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1억 806만 2천원, 신설교 시설비 집행잔액 19억 5천만원, 예비비 16억 7,863만 9천원 등 47억 3,670만 1천원을 감액하여, 효도휴가비 증액분 62억 6,288만 3천원중 36억 5,579만 6천원, 증평중학교 강당 신축비 부족액 2억 7,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6억 6,238만 5천원, 공무상재해보상금 추가소요액 1억 4,000만원, 자가운

전 차량유지비 252만원을 지출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심사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38억 6,656만 1천원으로 그중 98.6%에 해당하는 38억 1,156만 1천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인바, 동 재원을 교부된 목적에 따라 적정히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인상분과 증평중학교 강당신축비 부족액,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및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액 등 추가 소요액 47억 3,670만 1천원을 기정예산내의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자체 충당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강당과 같은 교육권장시설을 확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교부금 증대에 집행청은 물론 교육위원들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강당 신축시에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전입금은 일부 시·군에서만 전입되고 있는데, 도서관이 전체 주민을 위한 문화의 산실임을 널리 알리어 더 많은 전입금이 유치될 수 있

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 별첨11

(끝에 실음)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께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는데, 없으시다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입·세출 각각 5,394억 6,377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27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신용철 간사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철위원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신용철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신용철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4인 위원이 3일간에 걸쳐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결산이 제출됨과 아울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심사·의결하고 29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54회-제2차]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191억 4,910만 3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198억 3,883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1%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4,788억 361만 3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9%를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이 410억 3,521만 9천원이 발생되어 다음 년도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은 총 5,198억 6,433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5,198억 3,883만 2천원이 수납되고 2,550만 3천원이 불납 결손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4,262억 6,275만원으로 82%이고, 자체수입은 935억 7,608만 2천원으로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세입결산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은 예산액보다 각각 2억 6천만원과 7억 7천만원 이상이나 초과 수납된 반면, 재산수입은 3억 5천만원 이상이나 미징수되어 예산편성상의 세입재원 포착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징수율로 보아 세입징수에 걱정을 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지출액이 4,788억 361만 3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2.2% 집행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25억 7,788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3%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77억 6,76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이월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이 18건에 83억 5,735만 8천원, 사고이월이 47건에 142억 2,053만 1천원, 총 65건에 225억 7,788만 9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본청이 18건에 116억 1,030만 4천원, 지역교육청이 47건에 109억 6,758만 5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94년도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비 학교의 복구지원 1,363만 2천원, 공무상 재해의 증가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 부족분 2억 8,219만 6천원, 금년 3월에 본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93년도 채권은 49만 1천원으로 '94년도 모두 이행되었으며, '94년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의 재산결산과 금고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입·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과 교육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에 충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입·결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징수율이 101%나 되어 일견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세입예산액에 비해 초과징수 또는 미징수액이 다소 발생되어 세입재원 포착에 다소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출결산부문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예산현액대비 3.4%로 전년도의 9.7%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심사위원 모두는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지적한 세출예산중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의 부적정 세출예산의 전용부적정, 시설공사의 설계변경과다, 부속시설관리 계획 및 예산편성 불합리와 같은 5건의 지적사항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차후로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제출한 '94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5인위원이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산을 작성하고 본 소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별첨12

(끝에 실음)

(신용철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37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행정사무

[제54회-제2차]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박동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기위원 발언대로 나눔)

●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박동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소위원회위원장 박동기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숙의 끝에 작성·의결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건 발의 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서 교육행정 사무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교육위원회 활동자료를 수집하고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또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그 일정별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3일 청주교육청 및 학생회관, 그리

고 10월 24일은 제천교육청, 10월 25일은 옥천교육청, 10월 26일은 영동교육청, 그리고 10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과학교육원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실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감사에 출석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은, 도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그리고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그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속기관인 학생회관과 과학교육원의 기관장과 그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일시 및 장소는 행당기관의 감사일과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별첨13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별첨14

(끝에 실음)

(박동기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는 곧바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 기타안건 처리

(11시 43분)

● 의장 박재현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타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조일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조일환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본회의 교육감님이하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한 저희 교육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초선위원이고 교육위원회 내지는 일반 의제를 정식으로 참여한 일도 없고, 사회를 본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의안을 발의하는 절차나 또는 그 내용과 의사진행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양해를 해 주세요.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 23일자 일간신문에 불행하게도 저희 충북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이어서 24일날, 전국방송을 통해서 충북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 아프면서, 우리 충북교육이 과연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저희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내용이 과연 사실인가, 여러가지 의심을 갖게되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교육에 임하시는 저희 충청북도 교육가족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축 피해 아닌가, 우려를 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 그 지역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학구열이 높고 지방 영재교육에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 충북교육이, 본래에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잘못, 또는 과잉해서 저희들이 비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룬다면, 차제에 과감하게 시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본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백일하에 저희 150만 도민에게 알려져서 저희 충청북도 교육가족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맡아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야 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54회-제2차]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 또는 본청에서도 상당히 면밀하고 신중하게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에게 현재까지 조사 또는 감사하는 내용을 저희에게 어떠한 장소 또는 어떠한 날짜를, 적절한 날짜를 결정하셔서 아직 상당히 시일도 촉박합니다.

미진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정식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예, 조일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정인영

방금 조일환 부의장님께서 지난 9월 24일자로 중앙의 모 방송국에서 그 학력고사 부당한데 초래한 내용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또 일부 신문사에서 이 내용을 취재를 해서, 성실한 우리 충북교육의 가족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방금 조일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 내용은 성실한 우리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상당히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그와 같은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라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반 구성을 감사1계장인 이만기사무관 이외에 장학사 1명을 포함해서 4명으로다 구성을 해서 지난 9월 28일서부터 9월 29일까지, 어제까지 여러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을 드리며는, 이 학력고사를 직접 취급한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하고 해당기관하고, 또 이 문제가 제기됐던 해당교육청하고, 또 보도에서 지적된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어제까지 마쳤고, 현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며는 보고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또 다른 하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영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별첨10
- ▶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11
-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12
-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별첨13
-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별첨14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54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5. 9. 26(화) 10:00 11:00	※ 교육위원 협의회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5.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 한조례안 제안설명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위원 선출의건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소위원회 활동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회 기 9. 26 - 9. 30. (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5. 9. 27(수) 11:00-13:00 14:00	[본회의 휴회] ※ 북한정세 설명회 ※ 소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감사소위원회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국가안전기획부 충북지부
'95. 9. 28(목)	[본회의 휴회] ※ 소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95. 9. 29(금)	[본회의 휴회] ※ 소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 	
'95. 9. 30(토)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의결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4.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5.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결 6.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회	

(별첨2)

1995.	9.	26.
第5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
臨	時	

1995 年度

主要業務報告

忠清北道教育廳

報 告 順 序

- I. 沿 革
- II. 一 般 現 況
- I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 IV. '95. 主要業務計劃

I. 沿 革

1949. 12. 31. · 교육법 제정(법률 제86호)
1952. 6. 4. · 시군 교육자치제 실시 : 도 문교사회국에서 관장
1962. 1. 6. · 시군 교육자치제 폐지 : 시군 기구에 편입.
- 도 문교사회국을 교육국으로 개편
1964. 1. 1. · 도·시군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법률 제1435호)
- 합의제집행기관인 도교육위원회 설치(2국 4과)
1966. 10. 3. · 청사 신축 이전(청주시 영동 84)
1972. 12. 30. · 직제 개정 : 부교육감제 신설 및 직제 조정(2국 7과)
- 충주시·중원군교육청 통합
1977. 9. 28. · 직제 개정 : 실업교육과 신설(2국 8과)
1978. 3. 7. · 직제 개정 : 기획감사담당관실 신설(2국 1담당관 8과)
1979. 9. 1. · 청사 신축 이전(현재 위치)
1981. 11. 19. · 직제 개정 : 부교육감제 및 실업교육과 폐지(2국 1담당관 7과)
1984. 4. 6. · 직제 개정 : 과학기술과 신설(2국 1담당관 8과)
1991. 3. 26. · 지방교육자치제(광역) 실시(법률 4347호)
- 교육위원회 : 심의·의결기관
- 교 육 감 : 집행기관
- 교 육 장 : 하급 교육행정기관
1991. 8. 16. ·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3451호)
- 부교육감제 부활, 직제 조정(3국, 3담당관, 10과)
1991. 9. 2. · 교육위원회 개원
1991. 12. 4. · 제8대 정인영 교육감 취임

Ⅱ. 一 般 現 況

1. 道 勢

□ 面 積 : 7,439km² (전국의 7.5%)

□ 人 口 : 1,425천명 (전국의 3.1%) / 가구수 416천호

□ 行 政 區 域 : 3市 8郡 163邑面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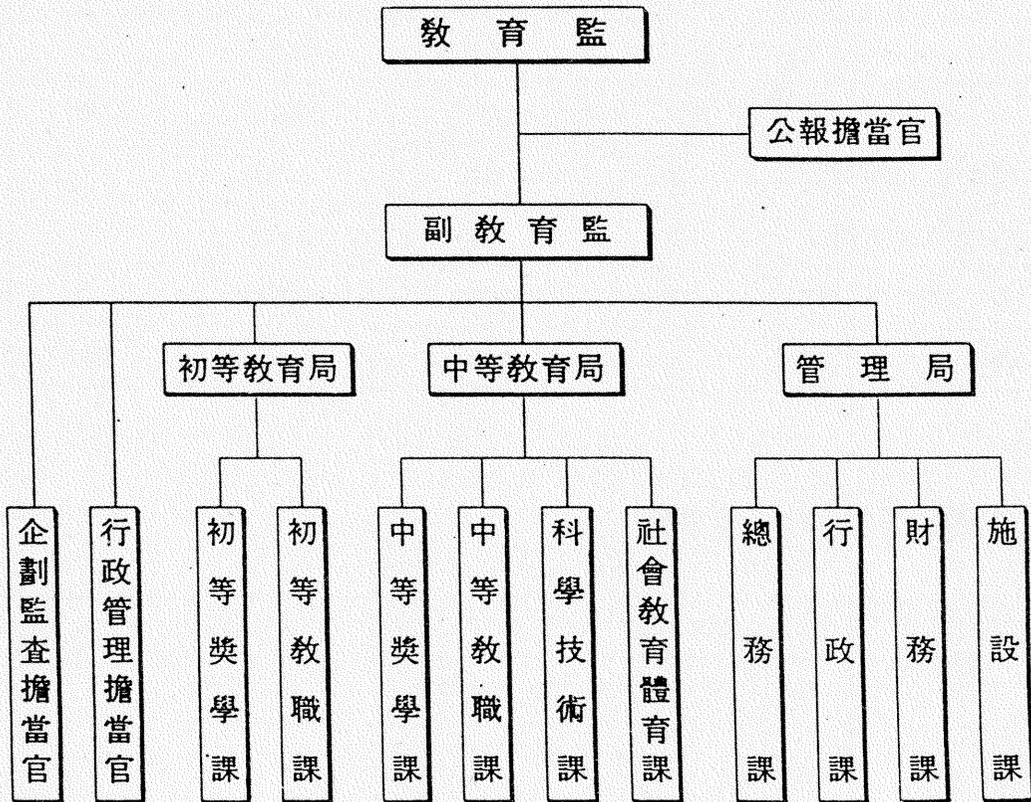
□ 地 域 的 特 殊 性

- 소백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의 중부 내륙에 위치, 산지 79%
- 대청호, 충주호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 풍부한 수자원과 관광자원
- 3개의 고속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
-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첨단 산업시설 및 농·공단지의 확장
- 충·효·예를 숭상하는 교육·문화의 고장
- 세계 最古의 인쇄문화 발상지 : 청주 흥덕사지
-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학생 감소

2. 行政組織

□ 機 構

- 본 청 : 3국, 3담당관, 10과
- 직속 기관 : 7
- 지역교육청 : 11



□ 定 員

계	정무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16,575	1	13,305	213	1,057	1,999

3. 學校 現況

구 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계	865	8,025	294,564	13,305
유 치 원	382	720	18,520	810
국 민 학 교	283	3,859	122,587	5,148
중 학 교	114	1,761	79,202	3,706
고 등 학 교	73	1,471	68,413	3,394
방송통신고등학교	3	18	791	.
산업체부설학교	2	39	2,016	53
특 별 학 급	(4)	33	1,828	.
특 수 학 교	8	124	1,207	194

4. 學校法人 現況

.법인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학 생 수
	계	국	중	고	특수		
24	43	1	20	20	2	1,629	38,610

5. 社會教育機關 現況

계	공공도서관	학생회관	학 원	과외교습소
2,543	14	1	1,688	840

6. 財 政 現 況

□ 총규모 : 535,59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세 입	의 존 수 입	478,091	89.26
	· 국 가 부 담	477,584	89.17
	· 일 반 회 계 부 담	507	0.09
	자 체 수 입	57,506	10.74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 담	57,381	10.71
· 주 민 부 담	125	0.03	
세 출	인 건 비	373,387	69.71
	교 육 행 정 비 및 사 업 비	14,345	2.68
	학 교 운 영 비	32,711	6.11
	사 학 지 원 비	34,116	6.37
	시 설 비	78,247	14.61
	예 비 비	2,791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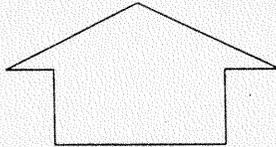
Ⅲ.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教育의 目標

21세기를 주도할

自主·創意·道德的인 健康한 韓國人 育成

-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 -



重點施策

1. 학교운영의 전문성·자율성보장으로 教育發展
2. 선진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全人教育
3. 국제화·세계화에 대처할 인재양성을 위한 秀越性 教育
4.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教育與件 造成

IV. '95. 主要業務計劃

1. 學校運營의 專門性·自律性保障으로 教育發展

□ 教職員の 意識改革으로 '信賴받는 教育' 風土 造成

-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자의 의식전환
 - 교장·교감 연찬회 8회 977명 / 교육발전 토론회 2회 615명
 - 투철한 교육관 / 발전적 사고 / 연구하는 자세 확립 / 신뢰성 회복
- 사도확립으로 교원존중 풍토조성
 - 존경받는 사도의 실천 : 정성어린 수업 / 사제동행 / 솔선 수범
 - 성실한 교원 우대 : 우수 교사 발굴 표창 /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
 - 교육전문직 연찬회 / 전문화 대상 업무 지정 : 예산 등 6개분야

□ 學校長中心의 自律行政, 人和中心의 民主行政, 現場優先의 支援行政

- 자율행정 : 창의성 발휘 / 책임의식 고취 / 도급경비 지급관서 확대
- 민주행정 : 의사결정의 민주화 / 화합과 협력분위기 조성
- 지원행정 : 교단중심의 지원체제 확립 / 교수·학습 지원

□ 地方化 時代에 副應하는 學校運營

-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
 - 지역개발·문화행사·주민복지사업에 참여
-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학교육성
 -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 학교교육자문협의회, 교육발전간담회
 -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2. 先進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涵養을 위한 全人教育

□ 基本生活習慣과 바른 價値觀 形成으로 道德性 涵養

- 절제 (예절·경제·질서) 교육 : 가정·학교·사회에서 작은일부터 생활화
 - 1일 1덕목 실천교육 : 「바르게 사는 슬기」, 「마음발을 일구며」 활용
-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을 통한 바른 가치관 형성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 공동체의식 함양 / 봉사활동의 다양화
 -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 : 비행 예방 및 진로지도 / 생활지도 사례집 발간
 - 광복 반세기 경축 종합예술제 개최 : 6개 분야 / 학생·교원·학부모 동참
- 민족자존의식 고양으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 기반 조성
 - 선비정신·중원정신 문화의 계승 발전 / 충청문화 순회 답사
-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 : 가정의 날 운영 - 매주 토요일
 - 부모 교육자료 발간 보급 : 「올바른 가정교육」, 「가정교육 우수 사례집」

□ 學校教育의 正常化와 創意的 教育活動 展開

- 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학교교육
 -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즐거운 교실·열린교육 실현
-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평가방법의 다양화
 - 토의·탐구·노작학습의 심화 / 주관식평가 확대 / 학습의 개별화
-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실
 - 교육기회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 / 교육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 統一과 統一後의 삶에 對備한 教育

-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고취와 통일역량의 배양
 -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에 대한 교육 /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 교육
 - 통일의 3대 원칙, 3단계 통일방안 교육 / 통일대비 교육자료 발간

3. 國際化·世界化에 對處할 人材養成을 위한 秀越性教育

□ 學生들의 適性和 素質을 바로 알고 未來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培養

-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 : 조기발견 / 특수재능아 국·중·고 연계 지도
 - 특수재능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재교실·과학탐구반 운영 / 특수목적고 운영 내실
- 기초과학교육의 충실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 양성
 - 실험·실습비 증액 13억원 (10%증액) / 교육용컴퓨터 확충 1,043대
 - 학교과학관 운영 내실 : 학교 과학관별 중점 연구영역 지정 운영
- 외국어교육 방법의 개선으로 국제이해교육 강화
 - 외국어 조기교육과 회화능력 배양 / 국제이해 탐구학습장 조성

□ WTO 體制 出帆에 對備한 競爭力 強化 教育

-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으로 능력있는 기술인 양성
 - 농업계 고교 학과 개편 / 공업계 고교 첨단학과 신·증설
 - 공동실습소 : 첨단 기계조작 능력배양 / 농업계 1개소, 공업계 2개소
-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선택의 폭 확대
 - 진로지도의 체계화 : 국→진로인식 / 중→진로탐색 / 고→진로선택 및 준비
 -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 敎員의 資質涵養과 士氣昂揚으로 學生指導力 向上

-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을 위한 교원연수
 - 교원연수 5,908명 / 해외연수 185명 / 석사과정특별연수 68명
 - 외국현지연수 : 치코대 43명, 불·독 10명, 일본 13명
 - 수업의 질 향상 :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 /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법
-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료 개발
 - 장학자료 : 11개분야 72종 / CAI자료 : 247종 60,752편

4. 學習活動에 도움을 주는 多様な 教育與件 造成

□ 教授·學習에 便利한 教育環境 마련

- 教育활동을 생각하는 教育환경 조성
 - 교실 증·개축 106실 / 노후교실 중수 2,159실 / 실험실습실 확충 30실
 - 教育시설 사업에 관련 교직원의 의견수렴
- 학교 직접투자 教育비에 최우선 지원
 - 학교운영비 증액 : 교당25%, 급당16% / 첨단학습 기자재 확보
-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사무자동화 추진
 - 教育행정 전산망 구축 : 2단계 8억원 ('97 모든 기관 설치)
 - 教育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 교원 업무부담 경감

□ 教育與件 改善으로 均衡있는 學校發展

- 학생 수용능력 균형 유지
 - 학교 신설 : 국 3교, 중 2교, 고 1교 ('96. 3. 1개교)
 - 학교 통·폐합 : 분교장 개편 10교 / 학교폐지 31교 (분교장 포함)
- 쾌적한 유아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 독립원사 건립 : 10개원 31억원 / 유치원 종일반운영 확대
- 사립학교 教育여건 개선 : 재정결함액 지원, 46교 289억원

□ 需要者를 위한 教育福祉의 增進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관리의 내실
 - 학교 급식 : 183개교 (65%) / 양호교사 : 316교 (66%)
- 현대화된 복지시설의 확충
 - 학생수영장 : 3개소 62억원 / 단재교육원 강의실 확충 20억원
 - 태권도 올림픽종목 채택기념 도장 : 내수국교 8억원

(별첨3)

의안번호	제 54-4 호
의결년월일	1995. . .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9 . 18 .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번	안 호	54-4
--------	--------	------

제출년월일 : 1995. 9 . 1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국가부담수입 38억 1,156만 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25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2,250만원 등 총 38억 6,656만 1천원의 세입재원으로
- 본청에 57억 1,068만 7천원을 증액하고, 지역교육청에서 1억 9,597만 6천원과 예비비에서 16억 4,815만원을 감액하여
- 총 5,394억 6,377만 8천원의 규모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95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예산안 : 별 책

□ 참고자료

-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 책

(별첨4)

의안번호	제 54-5 호
의결년월일	1995. .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9. 26.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4-1

제출년월일 : 1994. 9. 2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5,198억 3,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788억 400만원이고,
- 이월사업비는 225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5,700만원으로서, 총 410억 3,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

□ 참고자료

-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 199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 별책

(별첨5)

의안번호	제 54 → 호
의결년월일	1995. .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9 . 18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54-3

제출년월일 : 1995. 9.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심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를 승인하는등 현행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안 제6조제2항제1호).
- 동일 내용의 조항 변경 사항임.

□ 개 정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법률 제4,853호, 1994.12.31.)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0조의 2(대통령령 제14,498호, 1994.12.31.)

□ 조 례 안 : 덧붙임

□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조사의뢰 및 동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자윤리법 제8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0조의2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8조제11항</u>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u>법 제8조제12항</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5조 (생략)	제4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②(현행과 같음)
1. <u>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u>	1. <u>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조사의뢰 및 동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략)	제7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생략)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생략)

⑪ (생략)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0조의 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별첨6)

의안번호	제 54-2 호
의결년월일	1995.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9 . 18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54-2
----------	------

제출년월일 : 1995. 9.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 정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4,951호, '95. 7.26.)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위의 회의수당 1년분 초과불가)
-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함(안 제3조제2항).
-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폐질등급을 적용하고, "상해"의 기준은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함(안 제5조).
- 보상금 지급대상별 "청구자" 및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하고, 청구자는 교육위원회회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함(안 제6조).
 -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청구자는 사망 당시의 유족으로 하고,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토록 함.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나 상해의 경우 청구자는 본인 및 대리인으로 하고,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청구토록 함.

- 보상금 지급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일시불로 계좌입금함(안 제7조 및 제8조).
- 도교육청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고, 동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토록 함.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3인은 교육감이 위촉함(안 제9조).
 -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함(안 제10조).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3조).
 -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함(안 제14조).
 - 심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제 정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조 례 안 : 덧붙임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총무처 훈령 제153호, '91. 6.21.)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교육위원이 회기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교육위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육위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위원 1인
2. 의무직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장중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 교육위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청 구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장 애 <input type="checkbox"/> 상 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구좌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p>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p>					
<p>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경위서 1부, 사망진단서 1부.</p> <p>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p> <p>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p>					
<p>상기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직 인 </p> <p>충청북도교육감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시
보상대상 교육위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장 애 <input type="checkbox"/> 상 해				
사망·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대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결 정> <결정이유>				
심 의 결 과	<심의위원 서명>				
<p>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p> <p>충청북도교육감 귀하</p>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총무처 훈령 제153호, '91. 6. 2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총무처 훈령 제153호, '91. 6. 21.)

□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①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비상재해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②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근무시간의 시작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행사중 발생한 재해

③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 분진, 광선, 유해물질등 근무장소의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숙사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건강진단, 예방접종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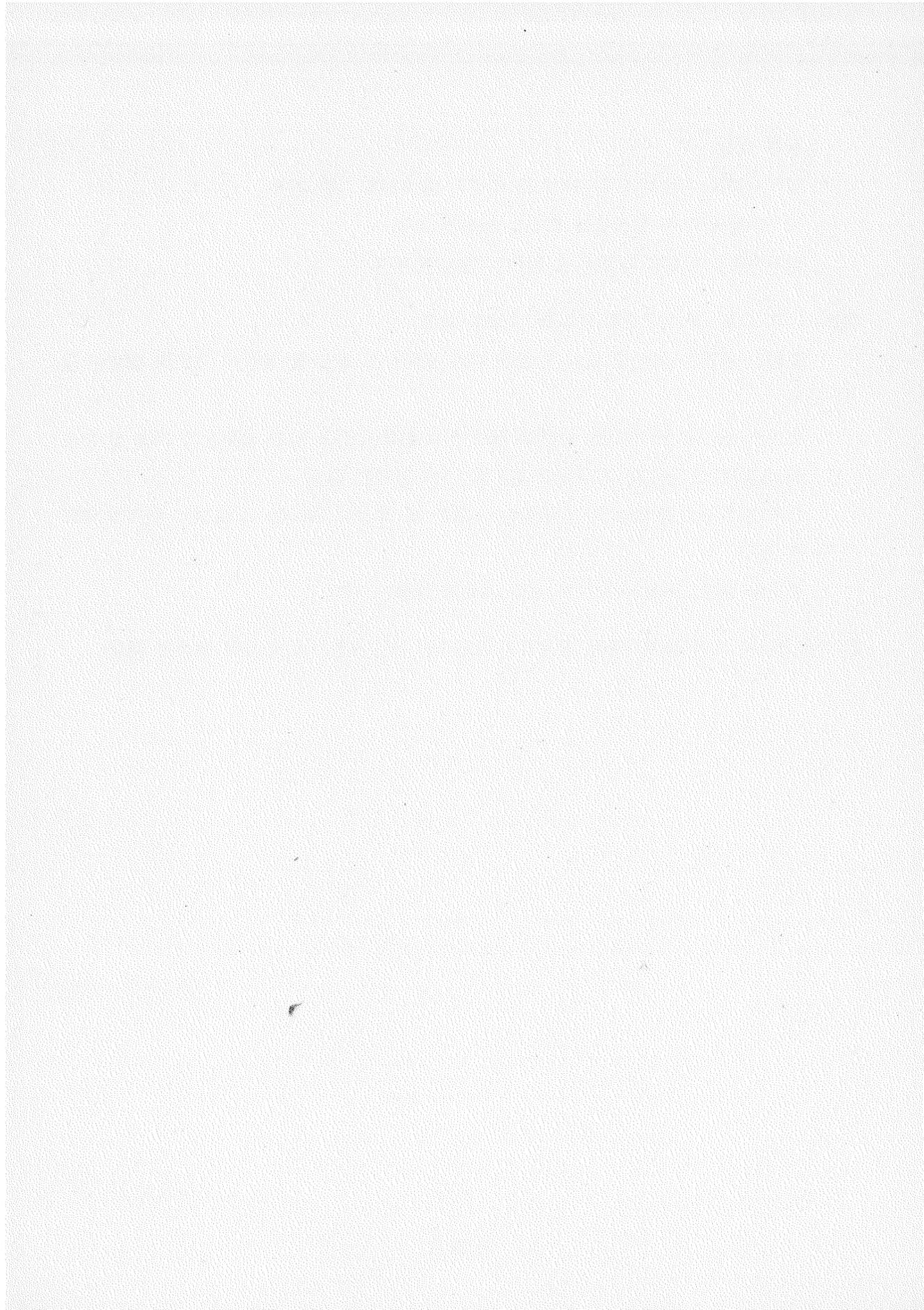
· 생한 재해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의한 재해
- 공무수행에 따른 원한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④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

⑤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별첨7)

의안 번호	제 54-1 호
의결년월일	1995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일환 교육위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5. 9. 19.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1
----------	------

발의년월일 1995. 9. 19.

발 의 자 교육위원 외 인

□ 개정사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 (안 제2조 및 제6조)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함. (안 제3조 및 제7조)
-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함. (안 제4조)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부칙 제1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개정안 : 별첨

□ 예산조치 : '95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기타 참고사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위원의 의정자료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
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위 원	1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비고 : 1.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비율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급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입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에 	1등실액	실비에	가동급 30	가동급 147	가동급 133	150	180	210
					나동급 30	나동급 117	나동급 99	150	180	210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급 또는 철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급 또는 철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에 	1등정액	실비에	가동급 25	가동급 130	가동급 107	140	170	195
					나동급 25	나동급 90	나동급 78	140	170	195
					다동급 25	다동급 72	다동급 58			
					라동급 25	라동급 62	라동급 49			

비고 : 1. 일비·숙박비·식비의 등급구분은 국외여비규정 [별표2]의 비교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참고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2조의 2, 제34조의 2, 제35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 2, 제44조, 제46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회" 또는 "분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95. 7. 2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95. 7. 26.)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 ①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 제17조의 2, 제17조의 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2. 3. 25.>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03호, 1995. 7. 1.)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인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도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시행령 제15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시·도의회의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행령 제15조 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1991. 8. 16.)
조례 제 1930호

개정 1992. 3. 20 조례 제1977호

개정 1992. 11. 27 조례 제2009호

개정 1994. 10. 14 조례 제2145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일비지급) 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 3 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정 또는 조례에 상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관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 4 조 (여비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5 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1994.10.14본항개정)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일비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1994.10.14 본조개정)

제 7 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을 말한다.

제 9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1991. 8. 16. 조례 제1930호)

1 이 조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최초의 교육위원회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비용비상조례(1984. 5. 25. 조례 제137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2. 3. 20.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 11. 27.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 10. 14.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시 교 통 비 (1인당)	숙 식 비 (1인당)	숙 식 비 (1인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 등 장 액	장 액	장 액	6,500	20,700	11,000
위 인							

1. 자동차 운입 및 항공운입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입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입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입을 지급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원화)

구 분	최 도 운 입	신 비 운 입	성공운입	차동지	일 비	국비비	국 비	비	
								15원미만	15원이상 30원미만
의 장 부 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친도입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상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요급 또는 친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친위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상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원의 사유로 인하여 친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동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급 (1원당) 가동급 30 다동급 30 다동급 30 다동급 30 다동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닝) 가동급 147 다동급 117 다동급 92 다동급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닝) 가동급 133 다동급 99 다동급 72 다동급 61 	150	180	210
위 인			1동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급 25 다동급 25 다동급 25 다동급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급 130 다동급 90 다동급 72 다동급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동급 107 다동급 78 다동급 58 다동급 49 	140	170	195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 (3) 유 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미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차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 · 대양주 : 인도, 타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 (3) 유 럽 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希臘, 세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로, 케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이, 아르헨티나
- (3) 유 럽 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기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1

(별첨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 9. 18.

○ 회부일자 : 1995. 9. 26.

다. 상정일자 :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5. 9. 26.)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5. 9. 26.)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5. 9. 27.)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심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를 승인하는 등 현행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2호).

○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에 관한 내용의 조항변경(안 제6조 제2항 제1호).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 자료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보완하는 것이므로, 심사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4명, 찬성 4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2

(별첨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 9. 18.

○ 회부일자 : 1995. 9. 26.

다. 상정일자 :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5. 9. 26.)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5. 9. 26.)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5. 9. 27.)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4,951호, '95. 7. 26.)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
 -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위의 회의수당 1년분 초과불가)
-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함(안 제3조 제2항).
-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폐질등급을 적용하고, "상해"의 기준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함(안 제5조).
- 보상금 지급대상별 "청구자" 및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하고, 청구자는 교육위원회회의를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함(안 제6조).

-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청구자는 사망 당시의 유족으로 하고,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토록 함.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나 상해의 경우 청구자는 본인 및 대리인으로 하고,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구토록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 이익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4명, 찬성 4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부. 끝.

3

(별첨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조일환 교육위원 외 3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 9. 19.

○ 회부일자 : 1995. 9. 26.

다. 상정일자 : 제5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95. 9. 26.)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5. 9. 26.)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5. 9. 27.)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7.1.,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 일에 지급토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함(안 제3조 및 제7조).
-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함(안 제4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예 따라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위 근거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위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4명, 찬성 4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별첨11)

4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995.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26일
- 다. 상정일자 : 1995년 9월 26일(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소위원회(1995년 9월 26일)
 - 제2차 소위원회(1995년 9월 27일)
 - 제4차 소위원회(1995년 9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부담수입 3,811,56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2,500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22,500천원 등 총 3,866,561천원의 세입재원으로,
- 본청에 5,710,687천원을 증액하고 지역교육청에서 195,976천원과 예비비에서 1,648,150천원을 감액하여,
- 총 539,463,778천원의 규모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95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 재원의 적정성과 예산의 목적 적합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35,597,217천원보다 3,866,561천원이 증액된 539,463,77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539,463,778	100	535,597,217	100	3,866,561	0.7
교육위원회	569,321	0.1	569,321	0.1	0	0
본 청	435,965,025	80.8	430,254,338	80.4	5,710,687	1.3
교 육 청	101,786,567	18.9	101,982,543	19.0	△195,976	△0.2
예 비 비	1,142,865	0.2	2,791,015	0.5	△1,648,150	△59.0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3,811,561천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2,500천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22,5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성 질 별	예 산 액	구성비(%)	세 입 내 역
합 계	3,866,561	100	
특별교부금	2,971,000	76.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국, 무극국, 중평중, 단양중 강당 신축 2,000,000 ○ 청주고 과학관 신축 480,000 ○ 매피여상 기숙사 신축 457,000 ○ 시설 정밀 안전진단비 34,000

성 질 별	예 산 액	구성비(%)	세 입 내 역
국고보조금	840,561	2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 12,400 ○ 특별육성종목 지정학교 지원 81,600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비조정 △2,113 ○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경비 141,923 ○ 공고 2+1체제 운영교 지원비 조정 790 ○ 일반계고 직업교육경비 조정 △50,000 ○ 공고 2+1체제 운영교 기자재 확충비 조정 562,214 ○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비 조정 115,808 ○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 조정 △17,781 ○ 고교 공통과학 연수비 2,720 ○ 과학고 기자재 확충비 조정 △7,000
일반회계 진입금	32,500	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도서관 장서확충비 20,000 ○ 청원도서관 장서확충비 1,250 ○ 보은도서관 장서확충비 11,250
자체수입	22,500	0.58	○ 고등학교 입학수험료 증액(단가조정)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본청 5,710,687천원, 지역교육청 △195,976천원, 예비비 △1,648,15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관 별	본 청	지역교육청	예 비 비	계	구성비(%)
합 계	5,710,687	△195,976	△1,648,150	3,866,561	100
급여관리비	3,655,796			3,655,796	94.55
교육행정비	2,520	12,500		15,020	0.39
교육사업비	1,077,926			1,077,926	27.88
학 교 비	△49,210			△49,210	△1.27
사학지원비	△116,586	△534,476		△651,062	△16.84
시 설 비	1,140,241	326,000		1,466,241	37.92
예 비 비			△1,648,150	△1,648,150	△42.63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 내수국민학교 외 3개교 강당 신축비 2,000,000천원
 - 청주고등학교 과학관 신축비 480,000천원
 - 매피여상 기숙사 신축비 457,000천원 등
- 2,97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 후보선수 육성학교와 특별종목육성학교 지원비 94,000천원
 - 대학수학능력 시험평가 경비 141,923천원
 - 공고 2+1체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비 등 직업교육 확충비 611,031천원
 - 과학고 기자재 확충비 및 독학학위 취득경비 조정 △9,113천원 등
- 840,56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입금 사업으로 중앙도서관에 20,000천원, 청원도서관에 1,250천원, 보은도서관에 11,250천원 등 장서확충비 32,500천원을 계상하고,

○ 자체수입으로 고교입시관리비 21,7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정예산의 과목조정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 1,108,062천원, 신설교 시설비 집행잔액 1,950,000천원, 예비비 1,678,639천원 등 4,736,701천원을 감액하여,

- 효도휴가비 인상액 6,262,883천원중 3,655,796천원(부족액 2,607,087천원은 인건비 내에서 조정)
- 중평중학교 강당 신축비 부족액 276,000천원
- 국고대여장학금 부족액 662,385천원
- 공무상재해보상금 추가소요액 140,000천원
-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2,520천원을 지출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였음.

나. 삭감내역 : 해당없음.

다. 종합의견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3,866,561천원으로 그 중 98.6%에 해당하는 3,811,561천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서, 동 재원을 교부된 목적에 따라 적정히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인상분과 중평중학교 강당신축비 부족액,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및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액 등 추가 소요액 4,736,701천원을 기정예산내의 예산

과목을 조정하여 자체 충당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매년 결산검 사시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강당과 같은 교육권장 시설을 확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교부금 증대에 집행청은 물론 교육위원들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만 강당 신축시에는 지역적인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전입금은 일부 시·군에서만 전입되고 있는데, 도서관이 전체 주민을 위한 문화의 산실임을 널리 알리어 더 많은 전입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임.

6. 수정안의 주요내용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12)

5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995.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9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26일

다. 상정일자 : 1995년 9월 26일(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2차 소위원회(1995년 9월 27일)
- 제3차 소위원회(1995년 9월 28일)
- 제4차 소위원회(1995년 9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4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519,838,832천원, 세출결산액은 478,803,613천원이고,
- 이월사업비는 22,577,88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8,457,330천원으로서 총 41,035,21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청취(보고자 : 재무과장 이기수)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519,149,103	519,838,832	478,803,613	41,035,219

○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19,149,103천원('93. 이월사업비 14,272,685천원 포함) 이며,

○ 세입결산액은 519,838,83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1%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478,803,61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2%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41,035,219천원이 발생되어 다음년도에 전액 이월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18,457,330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8,357,358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4,220,531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대 비징수율
504,876,418	519,149,103	519,864,335	519,838,832	25,503	0	100.1%	99.9%

○ '94.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519,864,33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19,838,832천원이 수납되고 25,503천원이 불납결손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426,262,750천원(82.0%)

- 자체수입 93,576,082천원(18.0%) 임.

특히, 세입결산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은 예산액보다 각각 2억 6천만원 과 7억 7천만원 이상이나 초과 수납된 반면, 재산수입은 3억 5천만원 이상이나 미징수되어 예산편성상의 세입재원 포착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징

수율로 보아 세입징수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504,876,418	14,272,685	519,149,103	478,803,613	22,577,889	17,767,601	92.2	3.4

'94.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478,803,61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2% 집행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2,577,88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3%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7,767,601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4%인 데,

○ 지출액 478,803,613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554,737천원(0.1%)
- 교육행정비 23,813,196천원(5.0%)
- 교육사업비 10,600,361천원(2.2%)
- 학교비 332,783,571천원(69.5%)
- 사학지원비 30,128,047천원(6.3%)
- 시설비 80,923,701천원(16.9%)이며,

○ 다음년도 이월액 22,577,889천원의 내용은,

- 피산교육청 도서관 비품 및 장서 구입비 30,000천원(0.1%)
- 목도중학교 어학실 비품구입비 30,000천원(0.1%)
- 시설비 22,517,889천원(99.8%)이고,

○ 불용액 17,767,601천원의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60,652천원(0.3%)
- 교육행정비 937,094천원(5.3%)
- 교육사업비 554,381천원(3.1%)
- 학교비 5,941,908천원(33.4%)
- 사학지원비 612,351천원(3.4%)
- 시설비 6,644,640천원(37.4%)
- 제지출경비 2천원(0%)
- 예비비 3,016,573천원(17.0%)으로서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비율이 3.4%로 다소 많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9.7%나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됨.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	8,357,358	47	14,220,531	65	22,577,889	

'94. 이월비는 명시이월 18건에 8,357,358천원, 사고이월 47건에 14,220,531천원, 총 65건에 22,577,889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 본 청 18건 11,610,304천원(51.4%)
- 지역교육청 47건 10,967,585천원(48.6%)임.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지출 결정액	예비비 지출액	비 고
계	295,828	295,828	지출승인 : '95. 3. 30.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피해 복구비 지원	13,632	13,632	지출결정 : '94. 7. 11.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 지원	102,646	102,646	지출결정 : '94. 8. 12.
“	179,550	179,550	지출결정 : '94. 12. 28.

위 3건의 예비비 지출은 '94년도에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비피해 학교의 복구 지원비 13,632천원과 공무상 재해의 증가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 부족분 282,196천원으로 금년 3월에 본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 권

(단위 : 천원)

'93년도말 현재액	'94년도 발생액	'94년도말 소멸액	'94년도말 현재액	비 고
491	0	491	0	

'93년도 채권 현재액 491천원은 '94년도에 모두 이행되었으며, '94년도에 발생한 채

권은 없음.

○채 무 : 해당없음

사.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93년도말 현재액	'94년도 증 감		'9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379,395,565	60,125,806	3,561,437	435,959,934	
행정재산	377,027,240	59,162,682	2,805,743	433,384,179	
잡종재산	2,368,325	963,124	755,694	2,575,755	

공유재산의 '9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56,564,369천원이 증가된 435,959,934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3년도말 현재액은 377,027,240천원이었는데, '94년도에 59,162,682천원이 증가되고 2,805,743천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의 현재액은 433,384,179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93년도말 현재액은 2,368,325천원이었는데, '94년도에 963,124천원이 증가되고 755,694천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현재액은 2,575,755천원임.

○물 품

(단위 : 천원)

'93년도말 현재액		'94년도 증 감				'94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7,185	27,167,759	8,075	10,366,656	1,219	1,762,077	24,041	35,772,338

물품의 '94년도말 현재액은 24,041점에 35,772,338천원므로, '93년도말 현재액 17,185점 27,167,759천원에 비하여 '94년도에 8,075점 10,366,656천원의 증가와 1,219점 1,762,077천원의 감소가 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입	총 지출	차인잔액	비 고
519,838,832	478,803,613	41,035,219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41,035,219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4.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519,838,832천원이고, 총 지출이 478,803,613천원이며, 차인잔액이 41,035,21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 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제규정과 교육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에 충실하여 적정히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세입결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징수율이 100.1%나 되어 일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세입예산액에 비해 초과징수 또는 미징수액이 다소 발생되어 세입 재원 포착에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또한, 세출결산부문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예산현액대비 3.4%로 전년도의 9.7%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봄.

따라서, 우리 심사위원 모두는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지적한 세출예산중 불용액 과다발생 등 5건의 지적사항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차후로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함.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13)

의안번호	제54-6호
의결 년월일	1995. 9. . (제 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 출 자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제출년월일	1995. 9. 30.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안 번호	54-6
----------	------

발의일자 : 1995. 9. 30.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의 목적

- 1) 교육행정사무 실행의 파악 및 교육위원회 활동자료의 수집
- 2) 주민 동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 주요시책의 사업성과 확보
 -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편익 저해요인의 제거
 -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예방
 - 비위·부정의 방지
- 3) 19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나. 감사기간 : 1995. 10. 23.(월) - 10. 27.(금)

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10. 23.(청주교육청 및 학생회관), 10. 24.(제천교육청), 10. 25.(옥천교육청),
10. 26.(영동교육청), 10. 27.(충청북도교육청 및 과학교육원)

라. 감사소위원회 구성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10명

마.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추진현황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실사를 병행함.

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 기관장,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 세부일정에 의한 감사일
- 장 소 : 감사 세부일정에 의한 감사장소

붙임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첨14)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감사소위원회

1. 감사의 목적

가. 교육행정 사무실태의 파악 및 교육위원회 활동자료의 수집

나. 주민 통제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

- 주요시책의 사업성과 확보
-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편의 저해요인의 제거
-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예방
- 비위·부정의 방지

다. 19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2. 감사기간 : 1995. 10. 23.(월) - 10. 27.(금)

3. 감사 세부일정 : 따로 붙임 [1]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감사보조 사무직원 지정

가. 감사소위원회

일련번호	직	성명	비고
1	위원장	박동기	※ 위원장 : 감사진행 총괄 지휘
2	간사	이기수	간사 : 감사진행 촉진
3	위원	김영세	
4	위원	조일환	
5	위원	정만재	
6	위원	김광수	
7	위원	이근수	
8	위원	신용철	
9	위원	안병일	
10	위원	이경윤	

나. 감사보조 사무직원

일련번호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1	의 사 국	의사국장	이 근 수	
2	"	의사과장	강 인 형	
3	"	의안담당관	김 용 환	
4	"	6급	라 기 복	
5	"	7급	노 한 창	
6	"	7급	송 석 록	
7	"	사무보조원	정 미 숙	
8	"	"	허 지 선	

5. 감사자료 요구

가. 1995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

나. 감사자료요구서 : 따로붙임 [4]

6.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업무추진현황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실사를 병행한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 기관장, 보조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나.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 세부일정에 의한 감사일
- 장 소 : 감사 세부일정에 의한 감사장소

8. 기타 행정사항

-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 1995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는 피감사기관별 20부를
 -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한 자료는 피감사기관별 통합본 7부와 각 위원별 발췌본 1부씩을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은 피감사기관별로 20부를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제출한다.
-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대외 비공개 자료 라고 표시를 하여 제출토록 한다.
- 감사장 배치도 및 출석공무원 명부(서식) : 따로붙임 [3]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① 우선순위	② 감사대상기관	③ 감시위원 수	④ 감사일정	⑤ 감사장소	⑥ 현장확인 대상기관	⑦ 주요 감사 사항	⑧ 감사 진행 순
1	중주교육청 학생회관	위원장외 9명	10.23.(월) (10:00 개시)	중주교육청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 초·중등 장학업무 · 교직의 전문성 제고 · 과학·기술교육 · 학교체육 교육 · 유아 및 특수교육 · 사회교육 · 학생생활지도 · 특별교육 · 영재교육 및 급식관리 · 공직기강 · 교육행정 자체 감사 · 교원감무경감 · 교육행정제도 개선 · 소송업무 수행 · 행정진화 · 인사관리 · 민원사무처리 · 제시행 업무 · 사립학교 육성 · 유소년회 운영관리 · 학생수용계획 · 예산운영 · 공사계약 · 재산관리 · 시설 및 공사관리 · 기타 사항 	가. 감사 선언 및 위원장 인사 나. 서약서 징구 다. 피감사기관장 인사 (간부 소개) 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도교육청은 제외) 마. 질의 및 답변, 서류확인, 현장 확인 등 바. 감사결과 강평 사. 감사종료 선언
2	제천교육청	위원장외 9명	10.24.(화) (10:00 개시)	제천교육청 회의실			
3	옥천교육청	위원장외 9명	10.25.(수) (10:00 개시)	옥천교육청 회의실			
4	영동교육청	위원장외 9명	10.26.(목) (10:00 개시)	영동교육청 회의실			
5	충청북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위원장외 9명	10.27.(금) (10:00 개시)	도교육청 회의실			

감사장 배치도

(전 면)

위원장
박동기

청주 김영세
충주 조일환
제천 정만재
청원 이기수
옥천 김광수

영동 이근수
진천 신용철
음성 안병일
단양 이경운

감사
보조

참관석
도교육청

보고
대

집행부석

직원 및 방청석

기자석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행정감사 출석공무원 명부

기관명 :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감사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와 동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5년 10월 일

기관명 :

직 위 :

서약자 : (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 사 요 구 자 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감사소위원회

199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조일환	1. 충주 금가국민학교 이전 계획과 그 사유	도교육청
	2. 충주 수영장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	도교육청
	3. 농진지구 학교지정 지침 및 운영현황	도교육청
	4. 기관별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현황 및 임용절차와 관련 규정 사본	도교육청
	5.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도교육청
	6. '9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5. 교육부감사 지적 내용과 처리결과	도교육청
	7. '95. 학생 안전지도 교육계획 및 실적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8. '95. 체육지정종목 운영현황 및 입상실적, 투자액(예산액)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9.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 방안과 교육적 차원의 이농현상 방지 대책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10. 문제학생(생활지도상, 가정형편상, 학습상)의 현황과 대책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김광수)	11. '94.3.10. 특채교사 현황과 근무상황(근평,포상,징계 등)	도교육청
	12. '94년도 완공 교사현황과 하자보수 내역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신용철)	13. '95. 시설공사(1억 이상) 내역과 계약방법, 계약금액, 낙찰률, 낙찰자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14. 교육위원회 의안연구관 결원 사유	의사국
	15. '94., '95.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 내용(요약)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정만재	1. 농어촌 교육 진흥지역 근무 교사 거주지 현황					각지역교육청
농촌지역 학교명	교원 수	농진지역내 거 주자 수(주민등 특 이전)	농진지역 외 거주 자수	등교 발령일	발령 전 거주지로 부터 통근가능자 수	비 고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이기수	1. '95년도 중점시책 파급효과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2. 생동감 넘치는 학교 교육방안에 대한 학교별 특색					각지역교육청
	3.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 실적 및 계획('94, '95년도)					
	가. 연수실적					
	학 교 별	연수과제	연수인원	연수기간		
	※ 연도별 학생, 교직원 구분하여 작성					
	나. 문제점 및 확대방안(장·단점)					
	4. 상담 봉사자 운영현황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가. 봉사현황					
	교육청별	상담봉사자수	상담실적	비 고		
	계					
	나. 문제점 및 향후계획					
5. 국제화 시대 및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는 장학방향 추진도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6. '96학년도 고교입시제도와 예상되는 문제점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7. 농촌에 소재한 국민학교 60세 이상 평교사 현황						
교 육 청		교 사 수				
계						
8.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로서 급식되지 못하는 학교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각지역교육청		

요 위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김광수	<p>1. 교장·교감 자격연수자 선발, 가. 교장·교감 자격 연수자 명단('94., '95. 초·중등) 나. '94년도 연수자 중 '95년도 승진자 명단 다. '94. 이전연수자중 미승진자 명단</p> <p>2.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학교운영의 방안으로, 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나. 지역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학교운영의 실적</p> <p>3. '96. 3. 1. 개교예정인 신축교 건축진척 현황(학교별 현황 초·중·고별)</p> <p>4. 교육용 컴퓨터 보유현황('95.8.30.현재 초·중·고)</p> <p>5. 특수목적고등학교 대학 진학현황(3년간 실적)</p> <p>6. 초·중·고생 가출 및 퇴학자 현황 가. '94., '95. 가출자 나. '94., '95. 퇴학자</p> <p>7. 교원 퇴임 현황('94.9.1.-'95.8.30.)(초·중등별, 직위별) 가. 정년퇴임자 나. 명예퇴임자 다. 의원면직 라. 기타</p> <p>8. 교장임기제(초·중등별) 가. 당초 임용자 수 나. 금번 재임용자 수 다. 탈락자 수</p>	<p>도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청주교육청 제천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p> <p>도교육청</p>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신용철	<p>1.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과 추진현황</p> <p>가. 이전기본 현황 및 투자 계획</p> <p>나. 추진실적(구체적 현황 : 확인, 후보지 등)</p> <p>다. 부진사유</p> <p>라. 대책</p> <p>2. 도내 유치원 현황</p> <p>가. 교육청별 원별구분</p> <p>나. 공립, 사립, 시범유치원 구분</p> <p>다. 정원대 현원(전임 대체 발령현황)</p> <p>라. 농촌 벽지 및 공단 지역 확대 계획</p> <p>3. '95. 예산중 지역교육청별 배분현황</p>					도교육청
교육청별		예산액	예 산 배 분			도전체 예산중 비율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p>4. '94., '95. 교육용 재산 매각 현황과 재투자 현황</p> <p>가. 매각 및 재투자 현황</p> <p>나. 폐지학교 현황 및 토지 현황</p> <p>다. 폐지학교 관리현황과 향후 개선대책(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기술)</p> <p>5. '95.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구체적 계수표기, 자료취합요)</p> <p>가. 시지역 교육청의 5억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정확히 표기)</p> <p>나. 군지역 교육청의 3억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정확히 표기)</p>				각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요 구 위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신용철 (조일환)	다. 낙찰자 현황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구분 교육청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설계비	예정가	낙찰가	낙찰자				
	대표자	회사명								
	6. 철거대상 교실현황									
	가. 교육청별, 학교별 철거대상 건물 기본현황(신축년도, 구조, 면적 등)									
	나. 년도별 철거 계획대 실적('93., '94., '95.)									
	다.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학교별 구분)									
	7. 수세식 화장실 현황									
가.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 (수세식 화장실 수/ 전체 화장실 수)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나. 년도별 추진계획										
다. 미설치 사유 및 수원지부근일 경우 정화대책										
(박동기)	8. 사립교원중 공립교사 특채현황						도교육청			
가. '94., '95. 구분 학교별 작성										
나. 성명, 과목, 자격, 배치학교명기										
9. 급식학교 현황						도교육청				
가. 교육청별 급식학교 비율(급식 학교수/전체 학교수)										
나. 도내 전체 급식학교 비율										
다. 미 실시 학교현황 및 추진계획										
라. 급식 곤란한 학교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대책										
10.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의 운영현황 및 대책						도교육청				
가. 시설 및 실습지 현황										
나. 학생 감소 현황('93. - '95.)										
다. 문제점 및 대책(구체방안)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신용철	<p>11. 오창고 설치 추진계획</p> <p>가. 설치목적과 신축계획</p> <p>나. 추진실적 및 문제점</p> <p>다. 인근 군지역 기존학교 피해대책</p> <p>12. 21C 정보화 교육대비 추진현황</p> <p>가. 추진사업 및 계획 대 실적</p> <p>나. 과학관 현황 및 효율적 활용 활성화 방안</p> <p>다. 컴퓨터 교실 현황 및 교육실적 및 향후 계획</p> <p>13. '95. 시책 추진사업 현황</p> <p>가. 사업별 추진계획 대 실적</p> <p>나. 부진 사유 및 대책</p> <p>다. 미시행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p> <p>14.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사업계획(구체적 통계 및 자료 작성)</p> <p>가. 도교육청의 조사 실적</p> <p>나. 주변 열악 시설 정비에 대한 시·군 단체장과 지원 협조 실적</p> <p>15. 사회체육시설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p> <p>16. 기초인성 교육을 위한 환경시설정비 지원 및 정화 위원회 구성과 활동실적</p> <p>17. 교육청별 특수사업 시책으로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과 대책</p>	<p>도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지역교육청</p> <p>도교육청 지역교육청</p>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박동기	1. '95년도 장학계획에 교육개혁의지 반영현황(시책별로 열거) 2. 학교운영 종합평가제 실시현황 ① 평가기준 ② 결과반영범위 ③ 문제점 3. 지역교육청별 과학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항목 교육청	설치 장소	연 건명	소요 예산	활용 계획및 방법	연간소요 예산 및 확보방안	대상인원 및 지도 교사	문제 점		
(이근수)	4. '95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현황과 '96년도 계획 5. 사립중등학교 재정현황과 대책('95.1.1. - '95.9.30.) (단위 : 천원)								도교육청 도교육청	
	학교 명	연간 운영비 (인건 비포 함)	재 원 조 달						계	비 고
(신용철)			자체수입		법인전입금		교육재정지원금			
			금액	%	금액	%	금액	%		
	① 과원교사 해소대책(자체) ② 공립교사 특채현황('95.1.1.-'95.9.30.) ③ 지원금 산출기초 ④ 부실학교 공립화 추진계획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안병일	1. 인성교육추진협의회의 조직·활동현황·과제 및 추진방향 2. 학교주변 불량서클 현황 및 피해상황과 조치 내용 3. 학교 부실건물 현황(건축년도 시공회사) 및 안전 점검 여부와 대책? 4. 일선학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 사례 및 향후 추진계획 5.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보장 및 공립 특채시 자격기준 6. 청주시 용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계획 및 현황 7. '95년도 9월말 현재 도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청주교육청 도교육청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이경운	1.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현황 가. '95, '96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											도교육청		
	구분 연도	분교장으로 격하					폐 교							
							분교 폐교			분교장 폐교				
	'95년													
	'96년													
	나. 통·폐합으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기사 배치현황('95.9.1)													
	구 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차량수													
	기사수													
	대기 기사수													
	다. 통·폐합으로 인한 버스 통학생의 등교시각 현황 <가정에서의 출발시간>													
	시각 학년	06:00 -06:20	06:20 -06:40	06:40 -07:00	07:00 -07:20	07:20 -07:40	07:40 -이후	합 계						
	1													
	2													
	3													
4														
5														
6														
계														
비율														
※ 교육청별로 작성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이경운	2. 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감사 실적('95년도) 가. 도교육청의 산하기관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현황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도교육청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79 436 316 490" rowspan="2">감사실시 기관수</td> <td colspan="6" data-bbox="316 436 1002 490">지 적 유 형</td> </tr> <tr> <td data-bbox="316 490 426 544">주 의</td> <td data-bbox="426 490 536 544">시 정</td> <td data-bbox="536 490 646 544">경 고</td> <td data-bbox="646 490 755 544">변 상</td> <td data-bbox="755 490 865 544">· · ·</td> <td data-bbox="865 490 1002 544">계</td> </tr> <tr> <td data-bbox="179 544 316 598"></td> <td data-bbox="316 544 426 598"></td> <td data-bbox="426 544 536 598"></td> <td data-bbox="536 544 646 598"></td> <td data-bbox="646 544 755 598"></td> <td data-bbox="755 544 865 598"></td> <td data-bbox="865 544 1002 598"></td> </tr> </table>		감사실시 기관수	지 적 유 형						주 의	시 정	경 고	변 상	· · ·	계																
	감사실시 기관수			지 적 유 형																											
			주 의	시 정	경 고	변 상	· · ·	계																							
	나. 지역교육청의 산하기관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현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79 683 316 738" rowspan="2">감사실시 기관수</td> <td colspan="6" data-bbox="316 683 1002 738">지 적 유 형</td> </tr> <tr> <td data-bbox="316 738 426 792">주 의</td> <td data-bbox="426 738 536 792">시 정</td> <td data-bbox="536 738 646 792">경 고</td> <td data-bbox="646 738 755 792">변 상</td> <td data-bbox="755 738 865 792">· · ·</td> <td data-bbox="865 738 1002 792">계</td> </tr> <tr> <td data-bbox="179 792 316 846"></td> <td data-bbox="316 792 426 846"></td> <td data-bbox="426 792 536 846"></td> <td data-bbox="536 792 646 846"></td> <td data-bbox="646 792 755 846"></td> <td data-bbox="755 792 865 846"></td> <td data-bbox="865 792 1002 846"></td> </tr> </table>		감사실시 기관수	지 적 유 형						주 의	시 정	경 고	변 상	· · ·	계																
	감사실시 기관수			지 적 유 형																											
			주 의	시 정	경 고	변 상	· · ·	계																							
	3. 교직원 징계 현황('95년도) 가. 교직원 자신의 과실로 인한 징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79 985 289 1039">구 분</td> <td data-bbox="289 985 412 1039">주 의</td> <td data-bbox="412 985 522 1039">경 고</td> <td data-bbox="522 985 632 1039">견 책</td> <td data-bbox="632 985 742 1039">감 봉</td> <td data-bbox="742 985 852 1039">사 직</td> <td data-bbox="852 985 1002 1039">사직자명</td> </tr> <tr> <td data-bbox="179 1039 289 1093">교 원</td> <td data-bbox="289 1039 412 1093"></td> <td data-bbox="412 1039 522 1093"></td> <td data-bbox="522 1039 632 1093"></td> <td data-bbox="632 1039 742 1093"></td> <td data-bbox="742 1039 852 1093"></td> <td data-bbox="852 1039 1002 1093"></td> </tr> <tr> <td data-bbox="179 1093 289 1147">일반직</td> <td data-bbox="289 1093 412 1147"></td> <td data-bbox="412 1093 522 1147"></td> <td data-bbox="522 1093 632 1147"></td> <td data-bbox="632 1093 742 1147"></td> <td data-bbox="742 1093 852 1147"></td> <td data-bbox="852 1093 1002 1147"></td> </tr> <tr> <td data-bbox="179 1147 289 1201">계</td> <td data-bbox="289 1147 412 1201"></td> <td data-bbox="412 1147 522 1201"></td> <td data-bbox="522 1147 632 1201"></td> <td data-bbox="632 1147 742 1201"></td> <td data-bbox="742 1147 852 1201"></td> <td data-bbox="852 1147 1002 1201"></td> </tr> </table>		구 분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사 직	사직자명	교 원							일반직							계							
	구 분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사 직	사직자명																							
	교 원																														
일반직																															
계																															
나. 학생 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징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79 1294 289 1348">구 분</td> <td data-bbox="289 1294 412 1348">주 의</td> <td data-bbox="412 1294 522 1348">경 고</td> <td data-bbox="522 1294 632 1348">견 책</td> <td data-bbox="632 1294 742 1348">감 봉</td> <td data-bbox="742 1294 852 1348">사 직</td> <td data-bbox="852 1294 1002 1348">사직자명</td> </tr> <tr> <td data-bbox="179 1348 289 1402">교 원</td> <td data-bbox="289 1348 412 1402"></td> <td data-bbox="412 1348 522 1402"></td> <td data-bbox="522 1348 632 1402"></td> <td data-bbox="632 1348 742 1402"></td> <td data-bbox="742 1348 852 1402"></td> <td data-bbox="852 1348 1002 1402"></td> </tr> <tr> <td data-bbox="179 1402 289 1456">일반직</td> <td data-bbox="289 1402 412 1456"></td> <td data-bbox="412 1402 522 1456"></td> <td data-bbox="522 1402 632 1456"></td> <td data-bbox="632 1402 742 1456"></td> <td data-bbox="742 1402 852 1456"></td> <td data-bbox="852 1402 1002 1456"></td> </tr> <tr> <td data-bbox="179 1456 289 1510">계</td> <td data-bbox="289 1456 412 1510"></td> <td data-bbox="412 1456 522 1510"></td> <td data-bbox="522 1456 632 1510"></td> <td data-bbox="632 1456 742 1510"></td> <td data-bbox="742 1456 852 1510"></td> <td data-bbox="852 1456 1002 1510"></td> </tr> </table>	구 분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사 직	사직자명	교 원							일반직							계									
구 분	주 의	경 고	견 책	감 봉	사 직	사직자명																									
교 원																															
일반직																															
계																															
다. 교원 및 일반직의 징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요 구 위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이경운	4. 기초 학력 정착 실태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교 과		한글미해득		구구미해득		영어 부진		수학 부진		
	급 별		'94	'95	'94	'95	'94	'95	'94	'95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5. 문제학생 현황 및 처리 결과('94., '95.)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가. 현황 (단위 : 학생수)										
	구분		사 유 별 수								
	기간		질도	폭력	성폭력	흡연	마약	기타	계		
	'93.9.1. -'94.8.31.										
	'94.9.1. -'95.8.31.										
	증 감										
	나. 지도대책										
	다. 제적 및 자퇴자 현황('94.9.1. - '95.8.31.)										
학교		학 생 수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구분		제적자 사유별				자퇴자 사유별					합계
		.	.	.	계	.	.	.	계		
국											
중											
고											
계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이경운	라. 제적자 및 자퇴자에 대한 예방대책												도교육청 각지역교육청			
	6. 책가방 없는 날 운영학교 및 운영실태															
	운영형태 급별	현 학	장 습	체 활	육 동	예 활	등 등	· · ·	· · ·	계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 중심활동 내용란에 표시함.															
	7. 교직원 신규임용자 발령 현황('94., '95년)													도교육청		
	구분	지역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우 천	영 동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합 계
	'94.	교원														
		일반 직														
	'95.	교원														
		일반 직														
	8. 타시·도, 타시·군 고교 진학자 현황('95학년도)													각지역교육청		
	구분	지역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우 천	영 동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합 계
타시·도 지역학교																
타시·군 지역학교																
* 내고장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대책																

요 구 원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이경운	9. 실업계 고교 3학년생의 현장실습 실시 실태 가. 학교별 현장실습 요청 기관(회사) 현황('95학년도) 나. 학교별 현장실습 배정현황('95학년도) 다. 현장실습 후 관련업체로의 취업 실태('95.2. 졸업자)						도교육청	
	교명	졸업생수	실습회사취업	타회사취업	미취업	계		
	계							
	라. 실습중 이탈학생 현황 및 지도 대책('95학년도)							
	교명	3학년학생수	실습학생수	실습중이탈자수	처리결과			
	계							
	* 실습 중 이탈학생 예방대책 마. 졸업 당시 취업율은 높은 편이나 1-2년이 경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지도 대책							

